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

전상숙 |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 **논문분야** 정치학, 한국 근대사

■ **주제어** 구조적 폭력, 민족자결, 3·1운동,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평화

■ **요약문**

3·1독립선언을 통해서 민족대표들이 주창한 것은 민족자결이었다. 그것은 동양평화의 일부로서 세계평화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족국가 단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제 당국이 집요하게 탐문했던 것은 ‘평화’에 대한 인식이 대립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러한 민족대표들의 인식 속에 나타난 ‘평화’의 개념과 배경은 무엇이고, 이와 별도로 3·1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이 폭력화 양상을 띠었는데 그것이 민족대표들과 마찬가지로 공히 민족자결·독립을 지향하는 것이었던 사실에 착안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민족자결’·‘독립’과의 관계, 그리고 ‘평화’를 위한 ‘폭력’적 방법의 필요 유무 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특정 개념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는 ‘평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활용하였다.

* 접수(2009.12. 7), 심사 및 수정(2009.12.18), 게재확정일(2009.12.18)

이 글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사업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사업>에서 2009년 8월 28일 주최한 학술대회 <동아시아 개념 충돌의 현장>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한다. 잦은 전쟁과 그에 따른 피해는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증대시켰다. 전통적으로 전쟁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때로 강자가 자국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무력으로 약소국을 침범하여 자신을 위한 평화체제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에 수반한 총력전을 경험하면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총력전으로 변화한 전쟁의 파괴력을 경험하면서 반전·평화사상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인류가 공생·공존하기 위한 평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50~1960년대까지 평화 연구는 동서 냉전 구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며 그러한 평화 연구를 비판하며 남북문제·제3세계·인권 등 전 지구적인 문제를 현실의 중심문제로 하는 이른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에 대한 평화론이 전개되었다.¹⁾ 비판적 평화 연구의 대가인 갈통(Johan Galtung)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폭력과 함께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식민통치의 억압, 공업선진국에서의 인간 소외 등에서 볼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기하였다. 그는 전쟁을 피한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인식에 머물지 않고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 사회체제의 적극적인 개혁에서 평화 인식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였다.²⁾ 이러한 갈통의 평화 연구는 종래의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에 대하여, 비가시적인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개념을 사회과학 분야의 평화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하였다.

소극적 평화란 국가 같은 인간집단 간의 조직적인 물리적 폭력, 즉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 평화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인간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탐구하여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인간집단이 협력, 조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결국 평화는 인간의 사회질서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 인식과 개념이 사회적 관계 속의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평화 연구의 중심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평화' 문제로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세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주체는 국가이다. 그것은 세계사회가 일반적으로 국가 간 사회(Inter-Nation Society)로서 특징지어져 있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평화는, 평화장치로서의 국가, 평화기구로서의 국제조직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전반의 총력전을 경험하면서 평화의 문제가 식민지·약소민족의 '자결권' 논의나 제3세계의 해방운동과 함께 논의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³⁾

3·1독립선언이 주창한 것도 민족자결이었다. 3·1독립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 대통령 윌슨(T. W. Wilson)의 민족자결선언은 실상 전승국 일본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평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된 윌슨의 선언에 대한 '민족대표들의 기

1) Johan Galtung(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Th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J. Galtung(1972),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The African Review*, Vol.1 No.4.

2) 최상용, 1978, 「평화의 인식」, 『국제정치논총』 18, 22쪽.

3) 조규갑, 1983, 「평화와 질서」, 『평화사상의 연구』,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엮음, 일년, 133~135쪽; 岡本三郎, 1987, 「평화연구의 전개」,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평화학—이론과 과제—』, 이경희 역, 문우사, 24~33쪽; 大隈宏, 1987, 「세계의 기능적 협력과 평화—기능주의의 사상과 실천—」,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平和學: 이론과 과제』, 문우사, 177쪽; 石田雄, 1987, 「異문화간의 대화와 평화」,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平和學: 이론과 과제』, 문우사, 227쪽; 이삼열, 1989,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 한국인의 평화철학과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방법』, 법문사, 144~154쪽.

대는 컸다. 3·1운동 직후의 일제 신문조서를 보면, 일제가 민족대표들에게 반복적으로 탐문했던 것이, “민족자결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공약삼장에 보이는 “최후의 일인까지”가 폭력시위를 의미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일제의 신문조서와 3·1독립선언서에서 민족대표들은, “민족자결에 기초한 조선의 독립이 일본이 말하는 동양평화 실현에 핵심이 된다”고 응수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민족대표들의 인식 속에 나타난 ‘평화’의 개념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연유하게 되는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한 그러한 민족대표들의 평화 개념과는 별도로 3·1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은 폭력화 양상을 띠었고 그것이 민족대표들과 마찬가지로 공히 민족자결·독립을 지향하는 것이었던 사실에 착안하였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민족자결’·‘독립’과의 관계, 그리고 ‘평화’를 위한 ‘폭력’적 방법의 필요 유무 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특정 개념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필요와 이때 다각적 측면에서 한 개념의 의미와 내용이 상호 충돌 또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념, 개념사 연구의 방법을 논하는 시험적인 것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면서 이 글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어 사용, 유포되는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평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상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3·1운동에서 나타난 ‘평화’, ‘민족자결’, ‘독립’ 등의 문제는 곧 목적과 방법의 문제 그리고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때로는 중층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전제하며 교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평화 연구 과정에서 개념화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개념사 연구에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전제로 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제국주의적 상황과 현실의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전제로

구축된 것이므로 이를 3·1운동의 상황에 적용해 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민족대표들의 ‘민족자결’과 ‘소극적’ 평화 인식

주지하듯이 3·1독립선언의 목적은 민족자결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3·1독립선언서에서 민족대표들은,

“오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고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정세 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래하도다. ...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번조를 승한 오인은 아모 주저할 것 업으며, 아모 기탄할 것 업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활의 낙을 포향할 것이며, 우리의 자족할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만한 대계에 민족적 정화를 결뉴 할지라도”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당한 발동...”

이라 하여 ‘도의’의 신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도의의 신시대란 곧 “전 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당한 발동”인 민족자결주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시대를 맞은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라 하여 민족자결 곧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할 것인가? 3·1독립선언서를 보면, 그것은 일본과의 적극적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과 평화적 노력을 통해서 지향해갈 것이었다.

“...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러 안이 하노라. ...”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 현재를 주무하기에 급한 오인은 ...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재치 안이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오. ...”

“용명과감으로써 구오를 확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지할 것 안인가. 또 이천만 함분축원의 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소이가 안일 뿐 아니라 ...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동망의 비운을 초치할 것이 명하니, 금일 오인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하는 것이며, ...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구구한 감정상 문제리오.”

“오등은 이에 분기하도다. ... 착수가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더”

독립을 선언하는 민족대표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은 공약삼장에 재강조되어 있다.

“1. 오늘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러한 3·1독립선언이 미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⁴⁾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은 그의 개인적인 이상주의적 이념과는 별도로 제1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러시아혁명 직후 볼셰비키 정부가 취한 시책에 대한 자유주의 연합국 측의 정치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볼셰비키 정부는 권력 장악 직후 교전국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평화에 관한 포고’를 비롯해서 민족자결권을 약속하는 ‘러시아 인민의 권리선언’을 공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목적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전쟁목적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 곧 윌슨의 ‘14개조선언’이었다. 미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8일 의회에서 전쟁종식과 민주주의 영구평화계획을 담은 선언을 제창하였다. 그것은 종래의 비밀외교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에 의한 세계분할을 도덕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 간 전쟁과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므로 모든 영토와 주권은 각 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영토문제의 해결은 타협이 아니라 관계 국민의 이해와 복지,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자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었다.⁵⁾

4)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20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0~41쪽, 48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2~5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손병희 신문조서」, 6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임예환 신문조서」, 74쪽.

5) 이우진, 1987,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외교사』, 평민사, 130~131쪽; 미국사연구회 편, 1992,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237~240쪽; 전상숙, 200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 19쪽.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은 그것이 나오게 된 정치적 맥락과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대전 중 연합국 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이었으므로 식민지 제민족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실행될 독립의 서광을 비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열강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식민지 약소민족들의 민족자결의식이 고양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식민지 제민족의 저항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3·1독립선언서에서 ‘도의’의 ‘신시대’가 왔다고 하여 “전 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당한 발동”인 민족자결을 선언하고, “최대급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고자 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은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 앞당겨진 종전 이후 월슨의 14개조선언이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전한 강대국과 관련된 지역에만 국한되어 식민지 제민족의 독립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민족자결’의 기본 원칙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패권의 논리에 집중하던 열강이 민족자결을 제창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민족자결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민족자결은 그것을 선언한 강대국의 호의에 대응하여 약소민족이 자결을 선언하고 호혜를 요청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혁명과 종전, 볼셰비키 정부와 월슨의 민족자결선언,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전후 처리 방식 및 일본의 참전과 파리강화회의에 임하는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의 정치적 맥락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그 일원으로서 동참하여 발언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족자결’은 한낱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었다.⁶⁾ 결과적으로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민족자결’의 문제를 비롯해서 현실주의적인 국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1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들은 그러한 실질적인 힘이나 현실주

의적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보다는 동양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책려해 자기를 건설하는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신운명을 개척”할 것을 역설하였다. 민족대표들의 신문조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민족자결’ 곧 ‘독립’에의 의지와 인식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⁷⁾ 그것은 3·1독립선언으로 민족자결을 선언하며 “최대급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한다고 한 것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자결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민족자결선언을 통해서 “최대급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하는바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구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1독립선언서를 보면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려 안이 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오, 결코 타의 파괴에 채지 안이 하도다”고 하여 일본의 지배에 대해 책망하거나 적극적인 항쟁으로 돌파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오히려 “용명과감으로써 구오를 확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지할 것 안인가” 한다. 이것은 조선의 독립이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고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구구한 감정상 문제리오”라 하여 독립의 당위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는 민족대표들이 ‘민족자결’선언의 배경이 된 국제정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한일 관계의 현실적인 힘의 격차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기능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으로 서구열강이 주도하는

6) 전상숙, 2009, 앞의 논문 참조.

7)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19~20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2쪽, 48~50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2~5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손병희 신문조서」, 6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임예환 신문조서」, 74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병덕 신문조서」, 80쪽.

국제 관계가 민족자결의 신시대가 되었다고 본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호소하면 서구열강이 이에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피식민지 한국 독립문제의 당사자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민족자결을 선언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자결을 선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건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대표들의 신문조서를 보면 일본의 지배를 비판하지만 러일전쟁에 승리해 조선을 병합한 일본의 위력 앞에 일본과 대결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제정세에 기대어 민족자결을 선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민족자결을 선언하면 변화된 국제정세상 일본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나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민족자결의 신시대에 우리 민족도 자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⁰⁾ 손병희(孫秉熙)는 파리강화회의를 기회로 민족자결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민심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민족을 독립시키고 싶은 희망에서 일본정부에 그 취지를 건의하고자 3·1독립선언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에 최린(崔麟)과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등은 모두 동의하여 민족자결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특히, 오세창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으나 “다만 역사에 그것을 남기고 조선 민족을 위하여 기쁨을 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도 임예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민족지도자들은 세계적 추세에 입각하여 “조선도 이 기회에 독립을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식민지 민족의 자결을 선언하는 3·1

독립선언서에 식민 모국 일본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지도적 역할과 그와 함께하는 조선 민족의 자결, 평화적 공존의 당위성만이 역설되어 있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와 신문조서를 통해서 볼 때 민족대표들의 민족자결 의지가 아무리 강했더라도 그들은 일본의 위력 앞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식민지 민족의 취약함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취한 차선책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지도적 역할과 우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민족자결의 새로운 국제정세에 기대어 민족자결을 선언하고 평화적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금일 오인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하는 것이며 …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3·1독립선언 속에 내재한 평화는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선언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민족자결은 곧 독립이었다. 그런데 독립으로 확보될 민족의 평화는 적극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식민 지배 구조를 전복해서 피식민지 민족의 갈등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립 곧 평화에 이르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무력이 없으므로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¹¹⁾ 불가능한 투쟁을 불사하기보다는 평화적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8)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19~20쪽, 28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1~4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손병희 신문조서」, 6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임예환 신문조서」, 74쪽.

9)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1~42쪽, 48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손병희 신문조서」, 63쪽.

1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9쪽.

11)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28쪽, 175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9쪽.

3. 민족대표와 일제의 '평화' 개념 충돌: '민족자결'을 둘러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의 충돌

민족대표들의 3·1독립선언 속에 내재한 평화가 소극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상대인 일제 당국이 3·1독립선언으로부터 받아들인 평화는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제국주의 식민 모국에게 피식민지민의 민족자결선언은 당연히 식민 모국에 대한 저항과 항쟁을 통한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제 당국이 민족대표들에게 집요하게 신문하였던 내용을 보면 분명하다. 일제 당국은 민족대표들이 3·1독립선언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확신하였다. 때문에 공약삼장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것은 곧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3·1독립선언, 곧 민족자결의 선언은 곧 “총독정치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졌다.¹³⁾ 그것은 곧 “일본의 주권을 이탈하고 독립을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곧 “일본의 정치조직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독립선언 자체가 일본의 정치조직에 대한 치안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⁴⁾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28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9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6~57쪽, 153쪽, 17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손병희 신문조서」, 7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병덕 신문조서」, 80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박희도 신문조서」, 147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홍병기 신문조서」, 18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신흥식 신문조서」, 183~184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양전백 신문조서」, 184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이명룡 신문조서」, 185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박동완 신문조서」, 186~187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한용운 신문조서」, 189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이동훈 신문조서」, 19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박준승 신문조서」, 192쪽.

1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오세창 신문조서」, 5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임예환 신문조서」, 74쪽.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최린 신문조서」, 29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49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병덕 신문조서」, 80쪽.

이것이 일제 당국이 3·1독립선언, 민족자결선언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가 민족대표들의 3·1독립선언을 독립의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 항쟁하여 식민 지배 구조를 전복하고 독립을 성취하자고 선동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민족대표들이 선언서에서 밝힌바 기본 입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민족대표들은 동양,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천만 함분축원의 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약삼장에서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고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것은 3·1독립선언이 “구구한 감정상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는 염원을 천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민족대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바 민족자결은 피식민지 민족의 갈등상태를 해소하고 독립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대표들에게 독립은 곧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비폭력 곧 평화적 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 당국에게 피지배 식민지민이 민족자결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식민 모국에 대한 저항과 대결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결사항쟁을 주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동양, 세계평화를 주창하며 이를 위한 민족자결의 호의를 기대하는 ‘비폭력·평화’의 외침보다는, 민족독립이라는 자결선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제 당국에게 ‘평화’란 민족의 안전과 독립 곧 국가안보와 방위라는 차원에서 목적으로서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생존과 팽창의 이력으로부터 기원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가적 과제는 사회적 근대화와 국가적 독립의

확보였다.¹⁵⁾ 이는 지리적 열세와 자원부족,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륙진출을 통해서 추구되었다. 일본의 대륙진출에서 인접한 반도 조선은 대륙으로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따라서 일본의 대륙진출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한 일본의 대륙정책을 정치적으로 논리화한 것이 이른바 ‘이익선’론이었다. 일본이 대륙정책을 적극화하기 시작하면서 1890년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조선에 ‘주권선’ 일본에 대한 ‘이익선’으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주권선’인 일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익선’ “조선 보호”할 것을 국책으로 정한 것이었다.¹⁶⁾ 주권선 일본과 이익선 조선의 논리는 ‘이익선’ 조선을 ‘보호’함으로써 일본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때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민족의 자결권을 보존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을 보호”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과 새로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러시아에서 벗어나 조선이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⁷⁾ 이 또한 조선의 민족적 자결권을 보존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민족자결권을 일본이 조선에 앞장서서 주창하고 이를 위하여 과감하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데 있었다. 물론 그 목적은 당연히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여 일본의 주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방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팽창주의적 민족자결권을 방위하기 위하여 조선을 도구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 생존의 문제인 주권선과 결부된 이익선 조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며 조선을 병합하였다.

15) 藤村道生, 1981, 『日本現代史』, 山川出版社, 4쪽.

16) 山縣有朋, 1966, 『外交政略論』(1890. 3. 3), 大山梓 編, 原書房, 196~201쪽. ‘이익선’ 조선과 ‘주권선’ 일본의 ‘국가 안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상숙, 2009, 앞의 논문, 121~125쪽 참조.

17) 전상숙, 2009, 앞의 논문, 122쪽.

일본의 ‘이익선’론으로부터 본격화된 대륙진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자국의 목적, 다시 말해서 주권국가 일본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위협적 존재도 제거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전쟁도 불사하였다. 그것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경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선진 산업국인 서구열강과 동등하게 세계열강의 일원으로서 민족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주권국가 일본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침략과 전쟁은 결국 일본 국가의 안전과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에게 ‘평화’란 일본 민족의 안전과 주권 곧 국가안보와 방위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섬나라 일본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경제적인 한계를 구조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전(전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목적 달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뒀으므로 해서 방법 곧 수단은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시기 일본 국가의 평화란 거기에 위협적인 요소를 구조적으로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지켜야 하는 적극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평화 개념은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사회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비록 그들만의 평화이기는 했지만, 평화 상태를 이루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3·1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들의 평화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일본의 눈에 3·1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들이 말하는 평화란 한낱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대내외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은 곧 주권과 민족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일본의 지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물론 ‘주권선’ 논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권과 민족자결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민족자결은 현재의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현재화되지 않은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전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조선의 민족자결은 이미 식민지로 전락

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3·1독립선언을 놓고 볼 때 국가주권과 민족자결을 확보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일 양자 간의 방법상의 괴리는 민족자결의 내용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서 식민지 제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그 피지배대상으로 전락한 식민지 조선의 지배·피지배관계에서 비롯하는 현실적인 힘과 입장의 차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3·1독립선언서와 신문조서에 나타난 일제 당국과 민족대표들의 민족자결에 대한 인식과 평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목적으로서의 평화', '방법으로서의 평화': 독립 지향과 비폭력 저항운동 간의 긴장과 딜레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제와 식민지 조선 양자는 민족자결의 필요와 의지라는 목적의 측면에서는 함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평화로운 국가주권 확보 상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극히 대극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 간에 민족자결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 간에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극적인 평화' 개념과 '소극적인 평화' 개념이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목적으로서의 평화는 19세기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국가주의의 흐름 속에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평화체제를 이루고자 하는 공통된 지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와 조선, 양자가 공히 민족자결의 필요와 의지라는 측면에서 함께한다는 것, 목적으로서의 평화 의지를 공유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였다. 그러나 민족국가주의의 흐름과 동반한 제국주의의 전개는 일제와 조

선을 중심으로 볼 때 민족대표들이 '공존의 평화'를 주창하기에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은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위하여 동북아의 섬나라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후발산업국이라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며 대륙국가화를 추진하였다. 그 출발점이라 할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부터 조선의 병합, 만주 이권의 획득 등 일련의 과정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그와 관련된 서구열강과 정치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권 관계를 구축하며 일본을 서구열강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자결, 독립문제는 단지 일본과 직결된 문제라기보다는 서구열강의 식민지, 이권과 연동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의 '주권선'론(이익선론)으로 알 수 있듯이 반도 조선이 섬나라 일본의 대륙국가화에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대륙국가 일본에게 사활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19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국가주의, '일민족 일국가주의'는 각 국가의 영토보존권과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을 가져왔다. 다민족국가는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없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근근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던 세력균형체제를 위협하였다. 이는 세계대전은 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경제적 이해의 충돌뿐만 아니라, 동유럽 특히 차르(tsar) 황제 이후 비러시아 민족들의 독립운동과 이에 편승한 강대국들의 이해다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후반 '소수민족제도', 곧 '자치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강대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독립국가의 수립 또는 타국에의 합병을 허락하기보다는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¹⁸⁾ 그러나 그것도 모든 강대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식민지

18) 신용호, 1997, 「민족자결권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개념」, 『자치행정연구』 2, 251쪽.

민족에서 자치권을 수용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시책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협력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었으므로 강대국, 제국주의 국가가 독립을 요구하는 식민지 약소민족을 회유하기 위한 기만적인 제도에 불과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족자결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레닌(V. I. Lenin) 특히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가져온 국제적인 파장은 상당히 컸다. 특히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평화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의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¹⁹⁾ 공개적인 강화협약 이후 비밀외교 종식을 선언하고(제1조), 군비경쟁의 지양과 자제(제4조), 그리고 식민지 민족자결선언(제5조), 전후 전쟁 당사국인 유럽 각국의 주권 회복(제7조~제13조), 국제연합체제의 필요(제14조) 등을 주창하였다. 제5조의 민족자결선언은, 식민지 주권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식민지의 요구를 자유롭고 편견 없이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제5조의 내용은 국제연맹 설립을 규정한 제14조, 즉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간에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체제가 특별한 협약 하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확인되었다. 이것은 대전 중 연합국 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제민족은 “명료하고 의문의 여지없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해 민족운동이 고양되었다.²⁰⁾

그러나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제정치에서 다른 원칙들, 특히 열강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유리한 경우 하나의 도덕적 무

기로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자국에 불리한 경우에는 그 원칙을 외면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레닌의 그것에 대응하여 자유진영 국가의 도덕성을 제시하기 위해 나왔다는 점이나 그것이 실제 파리강화회의에서 적용될 때 승전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패전국의 영토를 축소할 목적으로 패전국의 영토에서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하다. 또한 파리평화회의 이후 구성된 국제연맹헌장에도 민족자결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²¹⁾

결국 식민지 약소민족의 민족자결·독립문제는,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그야말로 현실적·실리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하면서 제국주의 식민 모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3·1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들에게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힘이나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기능적 인식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을 병합하게 된 일본의 위력과 그에 대한 조선의 절대적 약세를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3·1독립선언서에서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인식에 잘 나타나 있다.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려 안이 하노라. …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오, …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지할 것 안인가. … 금일 오인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얻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손케 하는 것이며, …

19) Henry Steele Commager(2006), 「윌슨의 14개조」, 『사료로 읽는 미국사』, 한국미국사학회 엮음, 궁리, 283~286쪽.

20) 野澤豊 외, 1988, 『아시아민족운동사』, 박영민 역, 백산서당, 31~32쪽, 전상숙, 2009, 앞의 논문, 19쪽.

21) 신용호, 1997, 앞의 논문, 252쪽, 전상숙, 2009, 앞의 논문, 19~22쪽.

라 하여 동북아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이라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극적 항쟁을 통해서라도 식민지 관계를 구조적으로 청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상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민족독립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을 선언하여 일본과 열강의 호의와 후원에 힘입어 독립하고 일본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공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3·1독립선언을 한 민족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평화의 개념을 보면 그것은 목적으로서의 평화와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병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사실상 일본의 위력, 결과적으로 일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독립 지향과 비폭력적 저항 간에는 항시 일제와의 협력 곧 친일을 둘러싼 긴장과 딜레마가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일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은 목적을 위하여 그에 문제가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이때 어떻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목적 달성과 직결되어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 가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목적으로서의 평화가 방법으로서의 평화와 대립하게 된다. 목적의 달성에 궁극적인 가치가 놓이게 되면 목적으로서의 평화와 방법으로서의 평화는 병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병존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양자 간에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우선순위의 선택을 둘러싼 딜레마가 상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제국과 식민지 민족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것은 민족자결의 방식을 놓고 협력·반민족 행위 대 저항·민족적 행위의 판단을 수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은 독립의 방법으로서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개념이 대립, 충돌하게 되는 것이었다.

5. 맺음말

3·1독립선언을 통해서 민족대표들이 주창한 것은 민족자결이었다. 그것은 동양평화의 일부로서 세계평화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족국가 단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제 당국이 신문조서에서 민족대표들에게 '월슨의 민족자결선언'의 내용과 공약삼장의 '최후의 일인까지'가 항일 폭력운동을 의미하는지 집요하게 탐문했던 것은 민족자결의 선언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민족대표들의 그것과 대립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 당국의 평화 개념은 주권 민족국가로서 번성하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기에 위협적인 요소를 구조적으로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 확보하고자 한 적극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3·1독립선언, 민족자결선언 속에 내재한 민족대표들의 평화 개념은 전쟁 없는 평화로서 "무력이 없으므로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 불가능한 투쟁을 불사하기보다는 일제와 평화적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일제 당국과 3·1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들은 공히 민족자결의 필요와 의지라는 목적으로서의 평화의 측면에서는 함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서 대극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 간에 민족자결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 및 식민·피식민 구조의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 간에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극적인 평화' 개념과 '소극적인 평화' 개념이 충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제 당국이 목적으로서의 평화에 우선적 가치를 둬서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보인 데 반하여 민족대표들은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평화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소극적 평화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자결이라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두고 방법으로서의 평화 개념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지배·피지배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대에 대한 인식 위에 목적으로서의 평화와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1독립선언을 한 민족지도자의 평화 개념은 목적으로서의 평화와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병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독립 지향(목적)과 비폭력적 저항(방법) 간에 항시 친일을 둘러싼 긴장과 딜레마를 수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 당국의 적극적인 평화 개념은 방법으로서의 평화와 병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병존을 추구하게 되면 양자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우선순위의 선택을 둘러싼 딜레마가 상존하게 된다. 결국 식민지 민족에게 그것은 협력·반민족 행위 대 저항·민족적 행위 또는 무저항의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독립의 방법으로서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개념이 충돌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화의 개념은 딱히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민족자결, 독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폭력(전쟁)은 평화인가 아닌가? 그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목적과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역설적으로 그 개념을 탐구하는 연구자의 역사 인식과 가치관에 따라서도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결국 개념은 사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딱히 무엇이라 규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간을 관통하며 소통하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또한 역설적으로 '개념'의 탐구는 그것이 사용되는 역사적 맥락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권동진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권병덕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박동완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박준승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박희도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손병희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신홍식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양전백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오세창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이동훈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이명룡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임예환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최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한용운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_____, 1990, 「홍병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山縣有朋, 1966, 「外交政略論」(1890. 3. 3),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2. 단행본

미국사연구회 편, 1992,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서울: 소나무.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엮음, 1983, 『평화사상의 모색』, 서울: 일념.

_____, 1983, 『평화사상의 연구』, 서울: 일념.

최상용 편, 1992,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평화문제와 국제질서』,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藤村道生, 1981, 『日本現代史』, 東京: 山川出版社.

日本平和學會編輯委員會 編, 1986, 『新國際秩序と平和』, 東京: 早稻田大學 出版部.

野澤豊 외, 1988, 『아시아민족운동사』, 박영민 역, 백산서당.

Galtung, Johan(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서울: 들녘.

Galtung, Johan · 池田大作(1997), 『평화를 위한 선택: 요한 갈통 이케다 다이사쿠 대담집』, 손대준 옮김, 서울: 신영미디어.

Kelsen, Hans(1953), 『法和 平和: 國際關係에 있어서』, 장경학 번역, 서울: 第一文化社.

3. 논문

신용호, 1997, 「민족자결권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개념」, 『자치행정연구』 2.

이삼열, 1989, 「비판적 평화연구란 무엇인가」,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 한국인의 평화철학과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방법』, 서울: 법문사.

이우진, 1987,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외교사』, 서울: 평민사.

전상숙, 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寺内正毅)」, 『사회와 역사』 통권71.

_____, 200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

조규갑, 1983, 「평화와 질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엮음, 『평화사상의 연구』, 서울: 일년.

최상용, 1978, 「평화의 인식」, 『국제정치논총』 18.

石田雄, 1987, 「異문화간의 대화와 평화」,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평화학—이론과 과제—』, 서울: 문우사.

岡本三部, 1987, 「평화연구의 전개」,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평화학—이론과 과제—』, 서울: 문우사.

大隈宏(1987), 「세계의 기능적 협력과 평화—기능주의의 사상과 실천—」, 日本平和學會編輯委員會 編, 이경희 역, 『平和學: 이론과 과제』, 서울: 문우사.

Henry Steele Commager(2006), 「월슨의 14개조」, 『사료로 읽는 미국사』, 한국미국사학회 엮음, 서울: 궁리.

Johan Galtung(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Th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_____(1972),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The African Review*, Vol.1 No.4.

Abstract

The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of 'Peace'

Sangsuk Jeon(Yonsei University)

■ **Key Word** : Structural Violence, People's Self-Determination, Sam-il[3.1;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Negative Peace, Positive Peace, Peace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3 · 1[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eclared the Korean people's natur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among all other nations on earth. Korean independence, they insisted, would be a part of oriental peace, and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world peace, which should be built on the basi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National 'Peace'. Japanese ruling powers persistently interrogated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advocating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Peace', opposed the Japanese rule.

The present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erm 'Peace' and the background in which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3 · 1 Independence Movement advocated it. In addition, it aims to examine the conception of 'Peace' in the historical context, focusing on the fact that Korean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3 · 1 Independence Movement acted violently, declaring National-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but they also asserted the principle of 'Peace'.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concepts of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which have been noted in the previous research on 'Peace' are very informing. The term of 'Peace' as used in the 3 · 1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considered with an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context and with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a people's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